

January 31, 2025

공정위의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개정과 가맹 계약서상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12. 30.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¹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2025. 2. 3.부터 75개 주요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 관련 기재 의무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협약이행 평가 시 가맹본부가 표준계약서를 전면 도입 및 사용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있고, 협약이행 평가결과가 우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1~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계약서 조항에 되도록 따르는 방향으로 가맹계약서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문제될 가능성을 낮추는 실무상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는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이행 실태 점검 시 실무상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조항 신설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2024. 7. 시행)은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공정위는 그 구체적 내용을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들에 반영하였습니다(아래 예시한 기타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제29조 참고).²

제29조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할 수 있으며(이하 이러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이라 한다.),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을 지정한 경우 해당 품목의 종류(규격 및 단위,

1 외식업종 4개(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서비스업종 5개(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 서비스), 도소매업종 4개(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

2 주요 부분에 밑줄 표시

거래상대방, 기준 시점 등을 포함한다)를 () [POS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지수단을 기재]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된 내용은 본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아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을 지연하는 물품은 가맹본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얻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공급의 차질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조달 후 사후 승인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직접 조달하는 구입강제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품질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기준시점을 포함한다)을 () [POS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지수단을 기재]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된 내용은 본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단,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의 창궐 등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전 세계적 수급불안정 등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변동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 통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⑤ 가맹본부는 위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내역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5년 간 저장·관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의 종류는 신제품 출시, 기존 제품 철수 등의 사유로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품목별 원가율 변경,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의 변경은 품목별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기에 []회로 한정한다.
- ⑦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변경한 즉시 변경된 내역을 () [POS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지수단을 기재]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된 내용은 본 가맹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II.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절차 조항 신설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2024. 12. 시행)은 (i)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ii)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구입강제품목 관련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 포함)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는데, 공정위는 그 구체적 내용을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들에 반영하였습니다(아래 예시한 기타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제48조 참고).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대한 변경협의 절차의 경우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를 일부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8조 (거래조건 변경협의)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2. 구입강제품목의 단위(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다만, 제29조³ 제4항에 따른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따라 가맹본부의 의사와 무관히 자동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4. 구입강제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5.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6. 구입강제품목의 운송비, 검수비 등 부대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조건, 대금결제방식 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그 밖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협의의 각 절차에 신의에 따라 성실히 임해야 한다.
- ③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및 유리한 거래조건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협이는 변경 예정 거래조건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POS, 전자우편, 홈페이지, 게시판 등) 방식으로 진행한다.
- ⑤ 가맹본부는 협의 예정일의 10일 전까지 변경 예정인 거래조건 구체적인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 방식과 장소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POS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비대면 협의의 경우에는 위 사항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⑥ 가맹본부는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협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 ⑦ 협의가 종료되면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협의한 날짜, 장소, 방식, 참석자
 2. 가맹점사업자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입장과 판단 근거
 3. 변경된 거래조건 등 협의로 결정된 사항
- ⑧ 협이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조건 변경 후에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를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즉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사항을

3 “제30조”는 오기인 것으로 보여서, “제29조”로 수정

통지할 때 사전협의를 할 수 없었던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
- ⑩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지정한 제3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거칠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변경, 구입권장품목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주제로 협의할 수 있다.
- ⑪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이외의 협의(계약상 또는 필요에 의한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4항에서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III. 대금결제 시 카드결제 제한과 관련된 규정 강화(11개 업종)

공정위는 업종특성상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다고 본 2개 업종(세탁, 편의점)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들에 '본사 등 특정 장소에서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강요 또는 유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 구성원

김흥기

변호사

T 02.3404.0489

E hongki.kim@bkl.co.kr

신상훈

외국변호사(New York)

T 02.3404.0230

E sanghoon.shin@bkl.co.kr

최휘진

변호사

T 02.3404.6406

E hwijin.choi@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